

auribrief.

No.45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심경미 부연구위원 김진욱 에이앤유디자인그룹 상무이사

1. 서론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경공업·제조업에서 IT산업 등 최첨단 산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하고,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신성장동력으로서 산업 육성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 개편과 육성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2009년 정부는『산업발전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지식 서비스산업으로 건축분야를 명시하였다. 이는 녹색 성장 등 새로운 경제성장 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구조의 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가입국 27개 중 21번째로 국가 경쟁력이 취약하며 규모

도 10인 미만의 사업체수가 전체의 87%로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반면 서울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는 세계 2,076개 도시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산업은 고도의 전문업종으로서 타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높고 관련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이다.

이에 신성장동력으로서 경쟁력있는 건축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패턴에 대응하고 이의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적 구조로의 전반적 체계정비와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축산업 개념 도입 등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중요성

1.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

전술했듯이 산업발전법에서 건축분야를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건축관련 법규에는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정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서비스업의 관점과 건축의 관점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에는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M7211),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이 포함된다. 여기서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M7211)’은 설계,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 공

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토지, 상업·산업·거주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지식,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활용, 조경설계 등의 지식을 이용한다. 또한 조경과 관련한 환경디자인도 포함한다.¹

건축분야를 지식서비스산업적인 관점에서 치중할 적합한 용어는 ‘설계업’의 범주 및 관련 활동주체의 범주, 관련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분야를 치중할 용어가 우선 선정되어야 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건축서비스산업’이라고 명칭을 정하였다.

한편, 엔지니어링 서비스(M7212)는 기계, 기기,

건물 및 구축물,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에 관련하여 물리 및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조언제공, 타당성평가, 예비 또는 최종 계획 및 설계, 건설 및 설치에 관련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의 감사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한편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 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며,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 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축 및 조경 설계업’과 건축기본법의 ‘건축디자인’이라는 행위를 서비스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²

그림1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9차개정)에서의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



1. 심우일(2005),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p.63.

2. 이 용어는 추후 실제로 건축분야에 산업적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논의와 충분한 검토 및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재정의 되어야 할 것이다.

표1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항목표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B	광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C	제조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P	교육 서비스업
F	건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H	운수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U	국제 및 외국기관
K	금융 및 보험업		

2. 건축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산업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 건축서비스산업이 창출하는 직접적 생산관계만을 대상으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특성 및 가치를 살펴보면,

첫째, 고도의 전문업종으로서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영 컨설팅,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건축서비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인적자본의 질적·양적 투입이 높은 업종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창출하는 전문 업종으로 노동

집약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문화적인 측면을 포함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높은 산업이다.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 기여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도 성장 기여율이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고용비중에 있어서도 고학력 고용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서비스산업은 1,000억원이 투자될 경우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 효과는 약 1.5배, 고용 효과는 약 1.9배가 창출되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고용효과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다.

셋째, 타 산업과의 관계 속에서 전후방연계³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생산유발계수⁴를 이용하여 각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것이 영향력계수⁵와 감응도 계수⁶인데, 이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산

3. 전방연계는 타산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관계, 후방연계는 타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한다.

4.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출액 단위이다.

5.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 자동차, 전자 등과 같이 타산업을 중간재로 많이 활용하는 업종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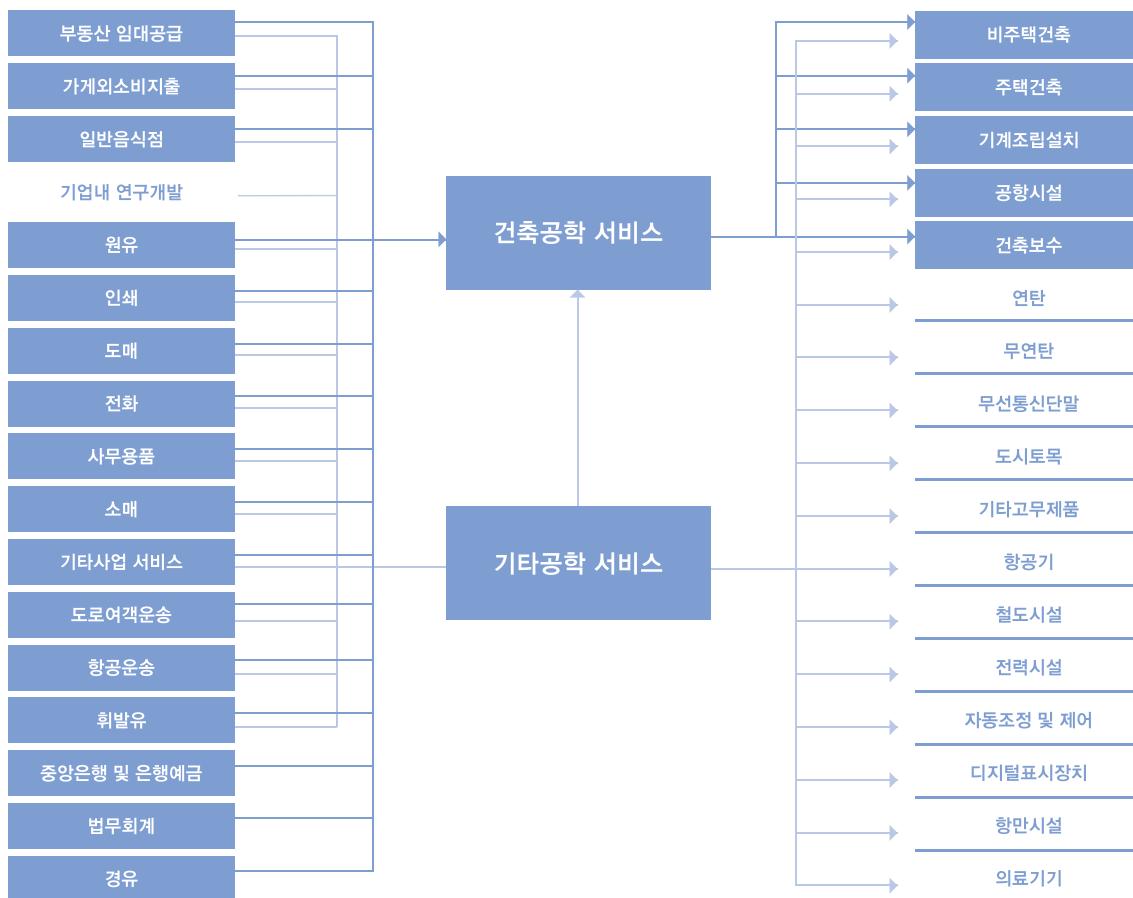
6. 전방연쇄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계수. 석유화학과 같이 타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산업부문의 감응도 계수가 높다.

표2 건축서비스산업의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 추이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영향력 계수	0.5373	0.5443	0.6332	0.7147	0.7014	0.6852
감응도 계수	1.9684	2.0500	1.4323	0.4868	0.4817	0.4583

그림2 생산유발 전·후방 연계효과, 2005.

(출처 : 김진욱 외(2008),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44)



업의 타산업과의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보면 후방산업에의 관련은 높아진 반면, 전방산업과의 연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타 산업에 의한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산업적 구조개편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건축서비스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산업적 개념을 갖고 구조개편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축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요구된다. 디자인 및 엔

지니어링 분야의 산업적 구조개편 및 정책지원은 법·제도정비, 진흥정책 수립, 재단설립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디자인 분야는 1990년대 이미 진흥법 체계의 법정비를 토대로 산업디자인분야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문인력 및 기업 양성, 디자인 연구개발 강화, 국제화 교류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의 디자인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음을 확인하였다. 건

축분야와 유사한 엔지니어링 분야는 2010년 4월 2010년부터 5개년간 1조8천억원의 재정지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역시 2010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의 법 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산업적 측면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산업적 개념 도입 및 진흥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3.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산업적 구조개편을 위해 건축관련 법·제도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설계가 어떻게 인식 또는 정의되고 있는지 『건축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기본법에 건축서비스산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정의만 명시되어 있을 뿐, 건축관련 법규에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은 부재 하며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축설계가 건설산업에 포함되는 건설용역업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용역이란 뜻은 영문으로 Service를 지칭하므로, 건설용역업이 건설서비스로 해석되어 져 결과적으로 건축설계가 건설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오해의 소지가 나타난다.

둘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축업은 건설업과 다르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가 여전히 건설기술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설계'의 정의는 건축사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은 '건축사법'의 설계를 제외하고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사과정에서의 설계는 건설기술의 설계, 즉 건축설계를 제외한 설계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용역업'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건설용역업에서 설계는 건축설계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설기술과 건설용역업에 있어 '설계'의 정의가 혼돈되고 있으며, 건축설계가 건설기술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전환을 위해 제조업의 일종인 '건설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인 '건축 및 엔지니어링 산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 계약관련 법규에서 건축설계는 용역계약과 공사계약에 해당되는데 건설공사시 설계기준의 계약지침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 계약시 평가되는 설계안에 대한 계약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둘째, 회계예규에서는 건축설계를 공사위주의 계약방식으로만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계약관련 법규에 건축설계기준에 대한 계약지침을 명시하고, 회

계예규에 있어서는 용역계약 부분에 건축설계 계약방식을 명시하는 법개정이 요구된다.

4. 해외에서의 시사점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산업적 구조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매출규모가 큰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제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 및 시사점

미국 사례에서의 특징 및 시사점으로는 첫째, 건축서비스업이 산업분류체계에서 조경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와 구분되어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적 정의는 일반적인 건축설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건축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까지 건축서비스업으로 그 영역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 건축서비스 관련 산업에 대한 공식명칭은 “Architectural Service”인데, NAICS⁷는 건축서비스산업(Architectural Service)을 “디자인, 시공절차, 조닝 규제, 건축법, 건물 재료들에 관한 지식을 적용하여 주거, 교육, 레저, 상업, 공업 등 용도의 건물과 구조물을 계획하고 디자인(설계)에 관련된 산업”⁸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NACIS에서 토지의 직접적 개발을 위한 계획과 설계는 조경서비스업(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으로 분류하고, 건물, 고속도로, 구조물 등의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건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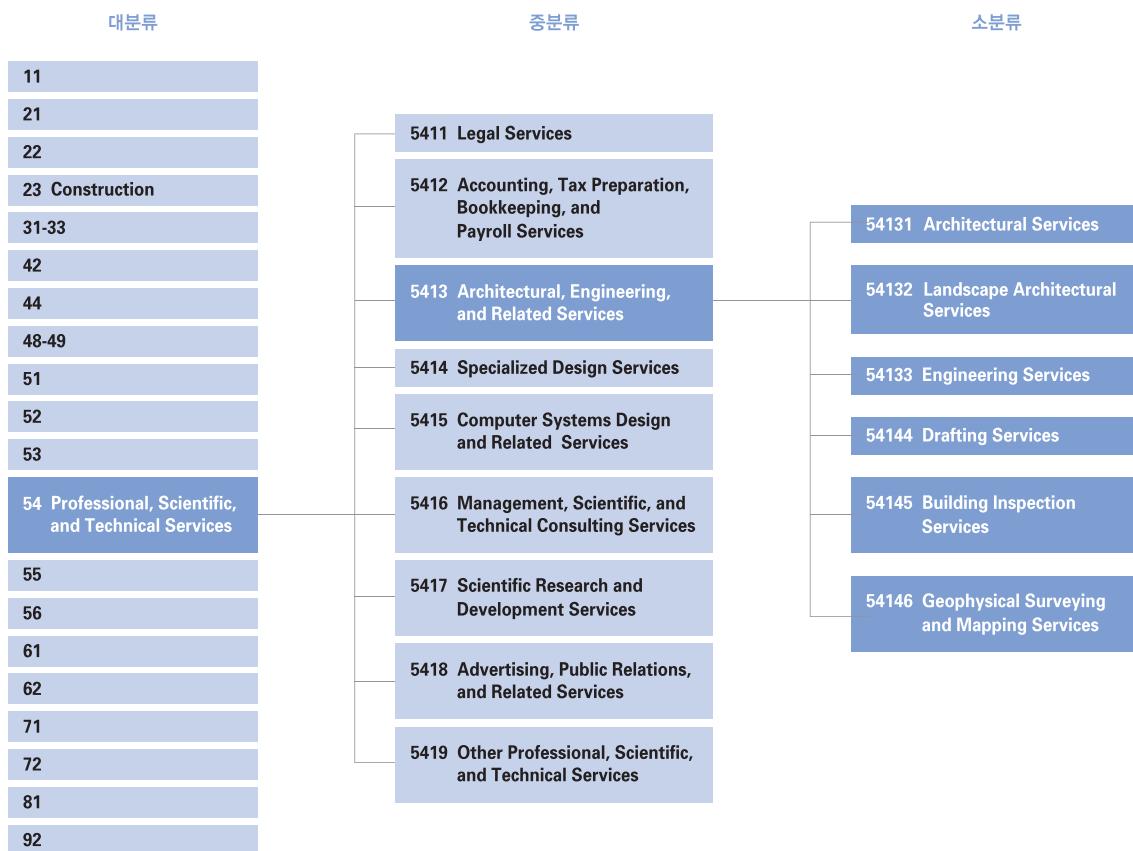
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은 “건설업(Construction)”으로 분류하여 다시 한 번 건축서비스산업을 건설업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의 공공계약법에 있어 건축서비스에 관한 건축가 및 설계사무소 선정과 계약은 Brook Act에 따라 일반적인 조달이나 시공에서 사용하는 최저가낙찰방식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건축전문가를 자격조건과 능력을 바탕으로 선정하고 가격을 추후에 협상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Brook Act의 원칙은 아니지만, 뉴욕시와 같이 가격경쟁요소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건축가의 자질과 능력, 설계접근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가격은 최종적인 선정단계에서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계약의 기본은 Brook Act에 의해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자격조건, 즉 디자인능력 또는 건축가치 기준의 선정방식(selection based on qualifications)이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다른 용역을 위한 계약방식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시공(construction)의 경우 프로젝트의 모든 중요한 범위(재료의 양, 시공방식 등)가 미리 정해질

7. 북미산업분류체계(The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8. “This industry comprises establishments primarily engaged in planning and designing residential, institutional, leisure, commercial, and industrial buildings and structures by applying knowledge of design, construction procedures, zoning regulations, building codes, and building materials.”

그림3 NAICS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표3**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의 대분류 항목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11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53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
21	Mining, Quarrying, and Oil and Gas Extraction	54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22	Utilities	55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23	Construction	56	Administrative and Support and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31-33	Manufacturing	61	Educational Services
42	Wholesale Trade	62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44-45	Retail Trade	71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48-49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72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51	Information	81	Other Services (except Public Administration)
52	Finance and Insurance	92	Public Administration

수 있어 가격산정이 비교적 정확하고 이에 따라 최저 입찰자가 선정될 수 있지만, 건축서비스의 경우는 초기 개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디자인과 계획의 범위와 작업 양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 당시에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비용에 있어서 최저가낙찰방식은 초기의 설계비가 저렴하다 할지라도, 결국 설계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완공 이후 관리비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프로젝트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근거가 되고 있다. 결국,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 프로젝트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저공사비, 최저설계비, 최저관리비를 추구하지만, 결국 프로젝트의 성공과 관리 측면에서 보면 “가치(value)”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초기의 최저설계비는 결코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 조달이나 시공사 선정과 같이 최저가 낙찰 방식에 의해서만 진행되어 결국 건축설계의 질적 확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현실적인 설계비가 지급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계약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은 관련 분야에서 서비스를 의뢰받는 개념으로써 이에 따라 사전기획 및 설계, 실시설계 부문의 수익성이 높은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건축디자인산업은 비주거용 빌딩, 특히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사무용 건축 프로젝트의 사전설계 및 디자인에 있어서 수수료지급형태의 계약으로부터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의 주 매출원은 공공용, 기관용, 상업용 지역 등에 대한 사전설계, 자문, 설계활동에 관련된 전문용역수수료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

그림4 ‘브룩 건축가–엔지니어 법(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 연혁 및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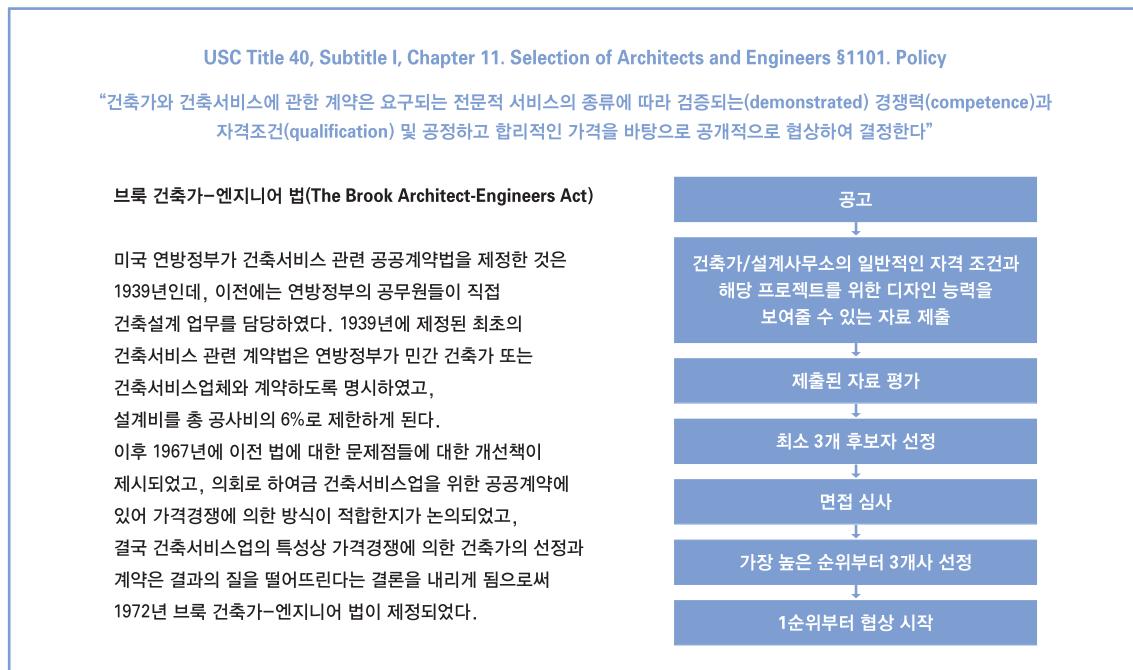


표4 일본의 법률체계 (출처 : 日本ウィキペディアフリー百科事典)

1. 헌법 · 법령통칙		
2. 행정법		
3. 재판법		
4. 민사법		
5. 형사법		
6. 사회법		
7. 산업법	7.1 통칙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
		중소기업 등 협동 조합법
		기술사법
		계량법
		물가통제법
		국가 총동원법
		농업기본법, 농약취제법, 가축개량증식법 등 약 13개
7.5 건축	7.2 농림수산업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약 24개
		금융상품거래법, 자금업법, 보험업법 등 약 8개
		건축기준법
		건설업법
		건축사법
		택지건물거래업법
		주택의 품질확보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맨션의 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8. 지적재산권	7.6 운수	고령자, 장애장등의 이동등의 원활화의 추진에 관한 법률 등 9개
		궤도법, 육상교통사업 조정법, 철도사업법 등 약 28개
		7.7 전기통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전파법 등 약 7개
9. 환경법		
10. 외사(外事)		
11. 관광		
12. 기타		

한 공공부문 발주 중심의 수요구조를 갖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집중도가 낮은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2. 일본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 및 시사점

다음으로 일본 사례에서의 특징 및 시사점으로는 첫째 일본의 전체 법체계 속에서 건축은『산업법』내에 포함되어 산업법의 통치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 둘째『건축사법』에서 건축업무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셋째 건축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관련 중소기업자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이 가능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의 ‘세이프티 넷(안전망) 대부제도’와 ‘세이프티넷 보증제도’는 정부계 중소기업금융기관에 의한 융자제도로서 건축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제도이다.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미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건축관련 법에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 않았으나,『산업법』내에 건축이 포함됨으로써 산업적 구조체계 속에서 보수기준과 재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 및 추진 전략

1. 법·제도 정비 방향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은 크게 기본 관련 법률에 포섭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건축서비스산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건축기본법에 편입할 경우, 건축기본법 입법체계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결과가 되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감퇴될 우려가 많으므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설정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율하려는 경우에 건축기본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표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 주요 내용 구성(안)

부문	주요내용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집행 시스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 관련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산업 인프라의 구축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장려에 관한 규정 · 표준화에 관한 규정 · 디자인심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전문인력의 양성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구(협회, 단체 등) 설치에 관한 규정 ·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수요의 창출과 산업 신규 진입 유인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술 내지 산업의 촉진에 관한 규정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관련업무 종사자의 지원 내지 보호정책 등에 관한 규정
산업 규모화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규정 · 실태조사 등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는 사안의 시급성 내지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를 통한 특별법으로 하기 곤란하므로 일반법으로 추진하되, 건축서비스산업이라는 독자적인 산업유형을 널리 확산시키고 이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간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법령의 제명을 좀 더 폭넓은 개념을 하고 있는 “진흥법” 체계로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정 산업의 육성 내지 지원을 위한 법률은 현재 우리나라에 총 33개가 제정되어 있는데(2010. 8 기준 5 개 법률 국회 계류중), 이를 법률을 검토한 결과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재단설립, 기술 및 교육지원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업 행위를 하는 산업 활동의 ‘활동주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제도 정비 추진 전략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으로서 건축기본법에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주를 『건축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축설계’ 부분으로 규정하는 것과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주를 건축설계, 도시계획, 조경설계 부문까지 포함하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별도의 ‘진흥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관련법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축설계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건축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설계 계약기준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우선계약 규정의 신설과 회계예규에 건축설계와 관련된 계약 기준 신설을 제시하였다.

6.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제도 개선의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명확화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2단계로 기존의 『건축기본법』의 부분개정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하고 건축관련 개별법을 개정하며, 3단계로 새로운 법률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으로써 정책개발 추진 방안과 건축법 개정을 통한 건축행정 선진화 방안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글로벌 인력양상 기반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해외수주·수출지원을 위한 전문지원센터 운영, 성장인프라 조성을 위한 대가기준 현실화,

『건축법』 분리 및 개정 연구 필요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분야 성과관리 대상의 일부로 인식되어 온 건축서비스분야가 고부가가치를 가진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육성, 지원해야 할 대상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축분야의 육성과 산업적 구조개편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건축관련 법·제도 정비와 종합적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uribrief.**

심경미 9654, kmisim@auri.re.kr

김진욱 前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